

인천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단157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4. 1.

판 결 선 고 2021. 4. 22.

주 문

1. 피고와 망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19,031,44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031,44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19. 망 D과 사이에 대출금액 20,100,000원, 대출기간 72개월, 이자율 15.9%, 지연배상금율 18.9%,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정하여 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20,1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망 D은 2020. 6. 21. 이후 위 신용대출약정상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0. 7.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20. 7. 23. 기준 D의 대출원리금 합계는 19,031,443원(=대출원금 18,519,066원+정상이자 496,302원+연체료 6,512원+연체이자 9,563원)이다.

나. 망 D은 2020. 5. 28. 배우자인 피고에게 망 D과 피고가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위 아파트 전체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5. 2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22.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 D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72,500,000원(=145,000,000원×1/2)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시가 53,760,000원 상당의 보령시 F 전 1344㎡, 2,383,902원의 예금채권, 시가불상의 스포티지차량, 소극재산으로 G은행에 대한 31,925,229원의 대출금채무, H 주식회사에 대한 30,191,272원의 대출금채무, I 주식회사에 대한 14,653,266원의 대출금채무, J 주식회사에 대한 11,033,430원의 대출금채무, K 주식회사에 대한 8,000,000원의 대출금채무, L 주식회사에 대한 1,035,041원의 대출금채무, M에 대한 10,000,000원의 대여금채무, N은행에 대한 9,674,285원의 대출금채무, 원고에 대한 18,519,066원의 대출원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행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원리금 변제를 지체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같은 날 망 D이 사망한 이후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대출금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위 대출금반환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 심화시킨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망 D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어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인 망 D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행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망 D의 채무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는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 망 D와 피고의 인적관계,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망 D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그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의 시가는 72,5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위 근저당권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는 30,191,272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42,308,728원(=72,500,000원-30,191,272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위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 중 적은 금액인 19,031,443원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19,031,44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031,44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주희

별 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동구 [] 아파트 [] 동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면 적 : 제17층 [] 호 46.9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인천광역시 동구 [] 대 91303.6㎡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91303.6 분의 25.45

(사해행위로 취소할 지분 : 갑구 6변 공유자 지분 2 분의 1
[] 지분)